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75-10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알아두면 편리해요!

◆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이 책자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거나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75-10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세무사회

CONTENTS

제 1 장

조세지원제도

1-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10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3
1-3 조세특례제한법	2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24

제 2 장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26
2-2 중견기업의 범위	3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제 3 장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6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1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4
3-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55
3-5 창투자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7
3-6 창투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8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60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62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64
3-10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66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68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70
3-13 증권거래세 면제	72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74
3-15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77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
3-17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3-18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85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88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102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07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109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2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114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6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18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20
4-10 대손금의 손금산입	122
4-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23
4-1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125

제 5 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1 통합투자세액공제	128
5-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32
5-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5
5-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9
5-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41
5-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43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45
5-8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48

CONTENTS

제 6 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52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61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5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68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71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74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77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79

제 7 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84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87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91

제 8 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96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5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7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10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12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214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217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219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221

제 9 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24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8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34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38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40
9-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242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44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47
9-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1

제 10 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266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288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91

제 11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296
11-2 중복지원의 배제	304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307

제1장

조세지원제도

1-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 10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 13

1-3 조세특례제한법 • 2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 24

1-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법인 및 내국인

내국법인 및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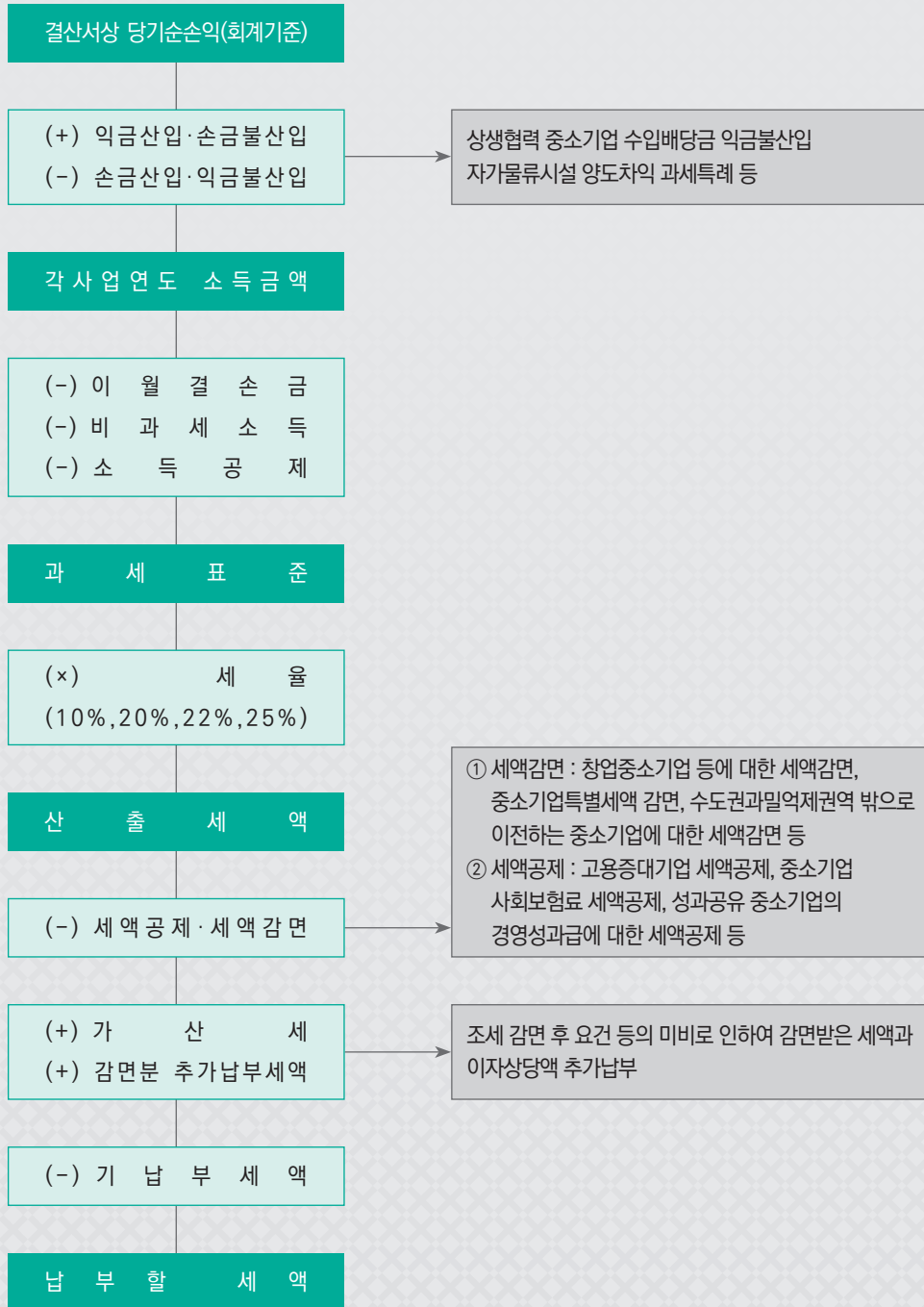
▶ 개념 및 용어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 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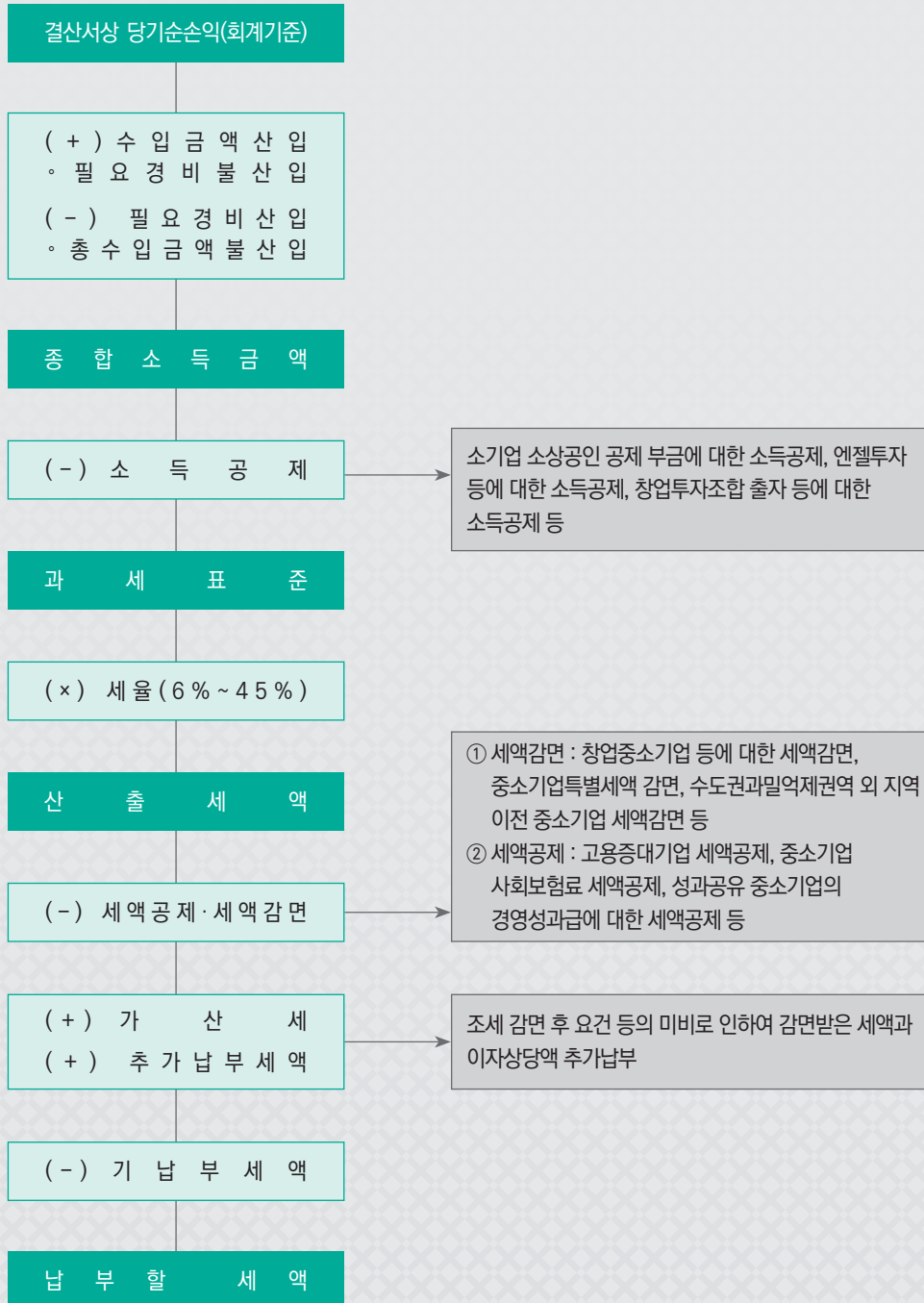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에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손 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세 액 공 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 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세 액 감 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 명시
이 월 과 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 개인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¹⁾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 · 고용 · 투자 ·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 ·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3-1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2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자 등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3-3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3-4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창투자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5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자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6	창투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구 분	지 원 내 용
배당소득 과세특례 ▶ 3-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3-8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3-9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3-10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3-11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3-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 3-13	창투자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 ▶ 3-14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지방세 과세특례 ▶ 3-15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3-16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3-17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18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4-1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4-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4-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4-5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접대비의 손금산입 ▶ 4-6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4-7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4-8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 4-10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4-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 4-12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통합투자세액공제 ▶ 5-1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5-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3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5-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5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6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대상 아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5-7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5-8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6-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6-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6-3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6-5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6-6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6-7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6-8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7-1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7-2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7-3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수도권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8-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8-3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8-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8-5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구 분	지 원 내 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6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8-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8-9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8-10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1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2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9-3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지 원 내 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9-5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 9-6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7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9-8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9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가업상속공제 ▶ 10-1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 10-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가업의 승계에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10-3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㉞ 조세특례 제한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11-1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보호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중복지원의 배제 ▶ 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1-3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1-3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및 내국인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조세감면의 유형

-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 및 내국인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도권 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제 2 장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 26

2-2 중견기업의 범위 • 31

2-1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㉒ 수도업	E36	
㉓ 건설업	F	
㉔ 도매 및 소매업	G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②⑤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②⑥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②⑦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②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②⑨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③⑩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③⑪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제외)	
③⑫ 운수 및 창고업	H	
③⑬ 정보통신업	J	
③⑭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③⑮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③⑯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제외)	
③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③⑱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③⑲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0억원 이하
④① 숙박 및 음식점업	I	
④② 금융 및 보험업	K	
④③ 부동산업	L	
④④ 임대업	N76	
④⑤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²⁾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³⁾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⁴⁾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⁵⁾

2)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을 준용한다.

4)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은 별표2를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3)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 기준)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적용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거나, ②중소기업기준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거나 ③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 ③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⑪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⑫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⑮ 가구 제조업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⑰ 수도업	E36	
⑱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⑲ 광업	B	
⑳ 담배 제조업	C12	
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㉒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㉓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㉕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㉖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㉗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㉙ 건설업	F	50억원 이하
㉚ 운수 및 창고업	H	
㉛ 금융 및 보험업	K	
㉜ 도매 및 소매업	G	
㉝ 정보통신업	J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㉔ 수도,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제외)	30억원 이하
㉕ 부동산업	L	
㉖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㉗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㉙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㉚ 숙박 및 음식점업	I	
㉛ 교육 서비스업	P	
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㉝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2

중견기업의 범위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조세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범위

◆ 세법상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요건	구체적 내용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주된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⁶⁾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 ⁷⁾ 이 해당 기업의 주식 ⁸⁾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⁹⁾ 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¹⁰⁾ 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천억원 미만)

【참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6)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7)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8)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9)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0)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㉞「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㉟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㉞금융업, ㉟보험 및 연금업, ㊱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질문과 답변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¹¹⁾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세무사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¹²⁾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7)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12) 헌법재판소 2006.12.28.선고 2005헌바59결정 다수의견.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세무사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임업은 비록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열거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12.31.이전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농업 및 임업도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¹³⁾



질문 4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 답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거나¹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¹⁵⁾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합니다.¹⁶⁾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주식회사절세의 의류제조매출액이 90억 원, 도매매출액이 40억 원이라면 주식회사절세의 주된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은 의류제조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절세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절세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은 130억(의류제조매출액 90억+ 도매매출액 40억)원이 되어 의류제조업의 소기업 기준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므로 주식회사절세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848호, 2017.2.7. 시행령 부칙 제3조.

1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3항

16)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2...1

제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6
-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1
-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 3-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55
- 3-5 창투자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7
- 3-6 창투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 60
-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62
-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 64
- 3-10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6
-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8
-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70
- 3-13 증권거래세 면제 • 72
-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4
- 3-15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77
-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1
- 3-17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83
- 3-18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5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지원 대상

〈법인세·소득세〉

-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재기중소기업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아래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 ① 중소기업일 것
- ②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구분	확인 요건	확인 기관
벤처투자	(1)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2)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	(1)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대출	(1)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2)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3)기술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52점 중 31점 이상)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40점 중 24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광업		-	(좌동)	광업	B	1,000억원 이하
②제조업		-	(좌동)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③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좌동)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	800억원 이하
④건설업		-	(좌동)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⑤통신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도매 및 소매업	G	1,000억원 이하
⑥물류산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운송지원 서비스업, 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O	(좌동)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억원 이하
⑦음식점업		-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⑧정보통신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	O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⑨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 서비스 제공업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제공업	-	해당사항 없음	금융 및 보험업	K	400억원 이하
⑩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제외	O	해당사항 없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⑪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⑫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⑬사업 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⑭사회복지 서비스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⑮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오락 서비스,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그 외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O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스포츠 및 여가관련업은 해당없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⑯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⑰이용 및 미용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⑱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운영업		O	(좌동)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⑲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O	(좌동)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O	자동차야영장업은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일반 유람선, 크루즈)	O	해당사항 없음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O	해당사항 없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O	(좌동)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⑳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㉑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600억원 이하
㉒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㉓전문디자인업		○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㉔광고업	광고업 중 문안· 도안·설계 등 작성업	○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㉕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㉖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㉗출판업		○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㉘연구개발업		○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 지원 내용

〈법인세·소득세〉

-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구 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청년창업중소기업(①)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창업일부터 5년간 50%	해당사항 없음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②)	연 수입 4,800만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창업일부터 5년간 50%	해당사항 없음
	연 수입 4,800만원 초과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해당사항 없음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기타 업종	창업일부터 5년간 50%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③)	신성장 서비스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기타 업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①, ②, ③에 해당 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④)	신성장 서비스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기타 업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신성장서비스업

- (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외의 업종) : 5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다음의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취득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구 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청년 창업중소기업(①)		창업일부터 5년간 75%	해당사항 없음
창업중소기업(②)		창업일부터 4년간 75%	해당사항 없음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창업벤처중소기업(③)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④)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⑤)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75%	
	기타	75%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구 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창업중소기업(①)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해당사항 없음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②)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100%	
	기타	50%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

〈등록면허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구 분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창업중소기업	100%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 포함)
예비벤처기업	예비벤처기업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할 경우 100%

- 위의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단, 재산세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소득세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취득세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 예비벤처기업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관련 법령

-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시행령 제29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매출 4,800원 초과, 신성장 서비스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21.1.1
 - ② 2021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③ 2021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 창업일부터 3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21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21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75\% = 135,000,000$
 - ③ 2021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35,000,000 = 45,000,000$
- 창업일 이후 4년부터 2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과세표준 동일 가정)
 - ① 2024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24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50\% = 90,000,000$
 - ③ 2024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기업의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¹⁷⁾

세무사 답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¹⁸⁾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¹⁹⁾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4년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 201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²⁰⁾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따라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사전-2018-법령해석소독-0717, 2018.12.10

18) 법인-2498, 2008.09.17.

19)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20) 국세청상담사례 2016.05.19



질문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출자를 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까요?

세무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¹⁾



질문 6

(주)A사가 파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 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까요?

세무사 답변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²²⁾



질문 7

2020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사업장을 상속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 식품제조업을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고 있었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해 제가 승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²³⁾

21) 법인-306, 2011.4.26.

22) 법인-1124, 2009.10.13.

23) 서면-2015, 2016.03.18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7년 중에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창업하였습니다. 나사장은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에도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개선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2021년에는 기존 도매업에서 취급하던 상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개선된 제품 생산하는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장은 납품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창업당시부터 영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후 2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도매)에 다른 업종(제조)을 추가하여 제조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²⁴⁾

또한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합니다.²⁵⁾

24) 서면법규-731, 2014.0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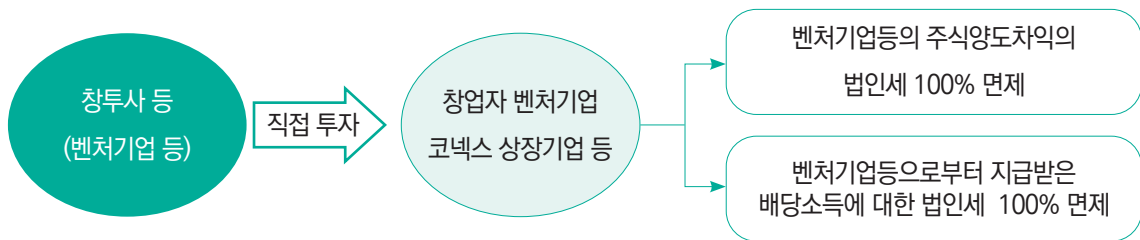
25) 사전법령소독-64, 2016.06.20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10%한도)

- ④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상장된 후 2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상장된 후 2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상장된 후 2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10%한도)

▶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의2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창투자 등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을 통한 창업자등에 출자

▶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3-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

- 투자대상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취득할 것
-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투자기업이 투자대상 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식 취득할 것
-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이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 지원 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다음의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

- 투자기업이 주식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 투자기업이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12조의3

3-5

창투자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자 등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창투자 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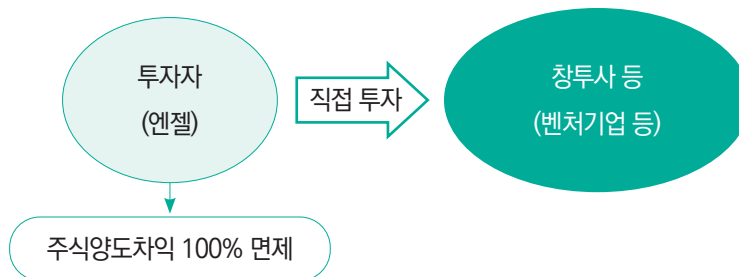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시행령 제12조의4

3-6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투사 등에 출자자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⑥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⑦ 「증권거래법」제 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위 ①~⑤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①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 ②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③ 설립된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④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지원 내용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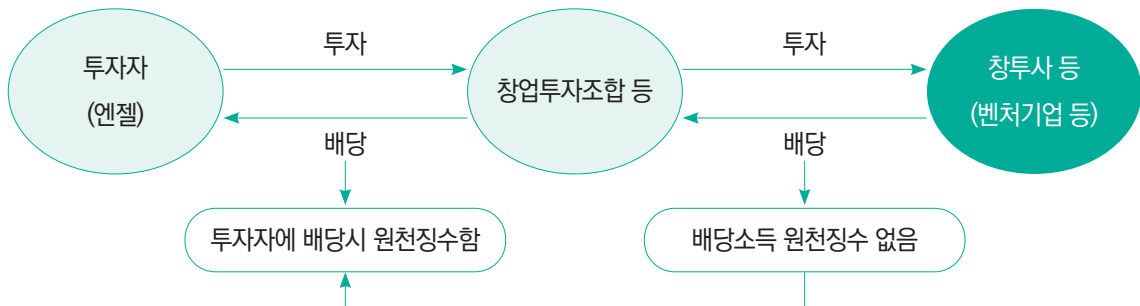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 ①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③ 「산업발전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지원 내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 절차 및 제출서류

- 그 조합이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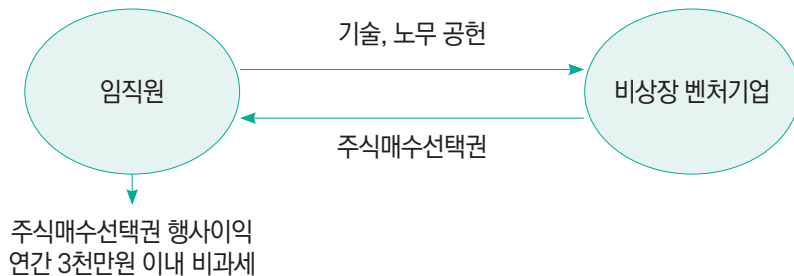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법률」*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술을 갖춘 자 등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②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부여받은 자는 주총결의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등 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제340조의 2)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지원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 질문과 답변



질문 1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한 경우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²⁶⁾

세무사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하였다면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사로의 전출이 소득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26) 조심2008서0862, 2008.12.31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 지원 내용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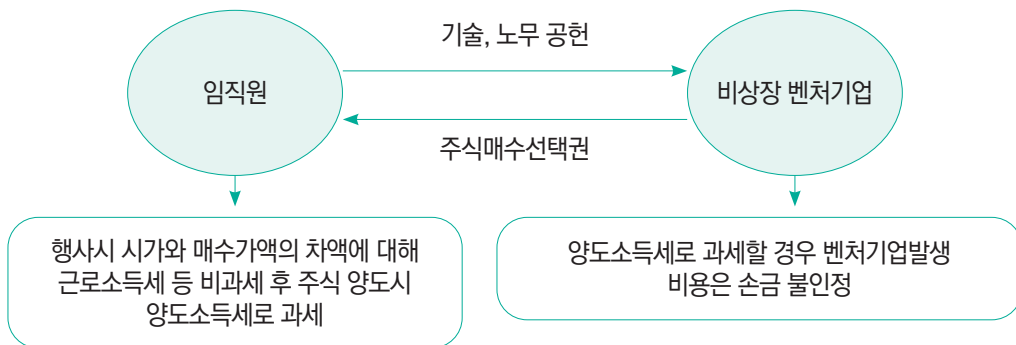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시행령 제14조의 2

3-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 *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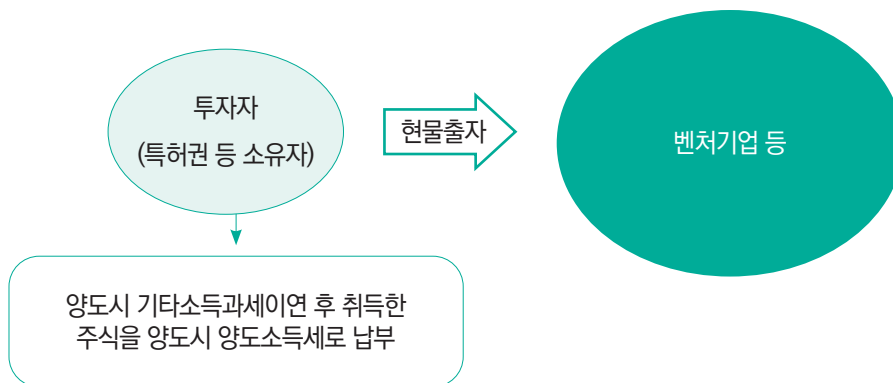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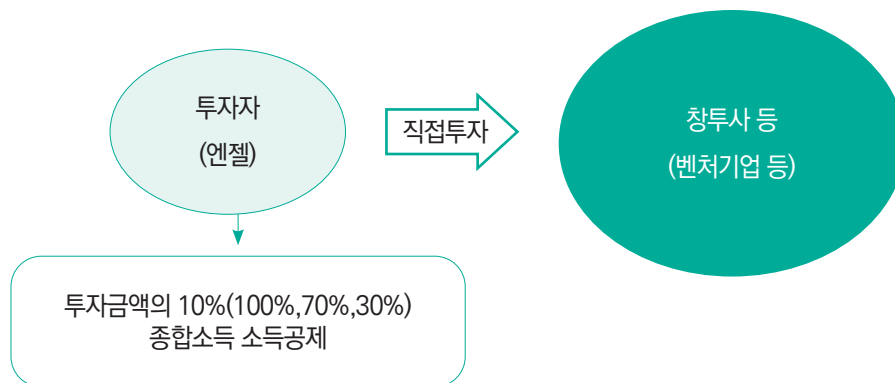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8조의 6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원 대상

거주자가 2022년 12월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③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④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 조합등록 신청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이상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 또는 지위의 양도 금지
-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 지원 내용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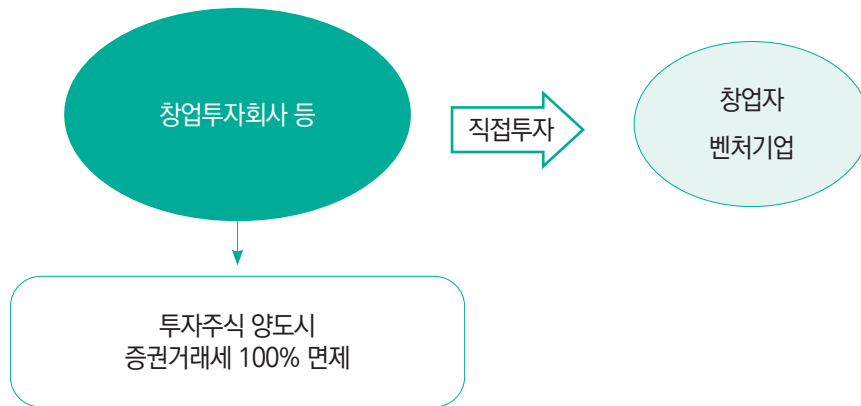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3-13

증권거래세 면제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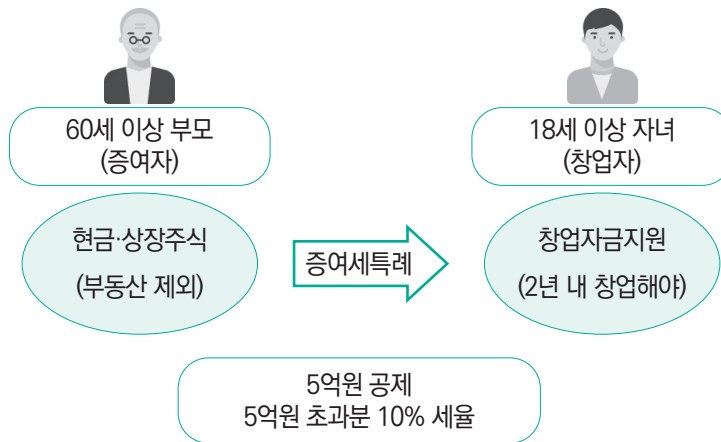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시행령 제115조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특정주식

▶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 절차 및 제출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질문 1 60세 이상된 아버지가 18세 이상된 자녀에게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하여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 합니다. 자녀가 창업하려고 하는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지요?²⁷⁾

세무사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절세상사의 나사장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광고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사장은 일단 아들에게 1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30억원까지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나사장씨는 창업시 1억원과 창업 후 1년 이내에 29억원의 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30억원까지 또는 신규로 10명 이상 고용한 경우 5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30억원(또는 5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님의 아들은 2.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30\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2.5\text{억원}$$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증 여 세 : $(30\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2.5\text{억원}$

사후관리 : 최초 증여 1억원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2차 증여 29억원과 1차 증여 1억 합계 30억원을 당초 증여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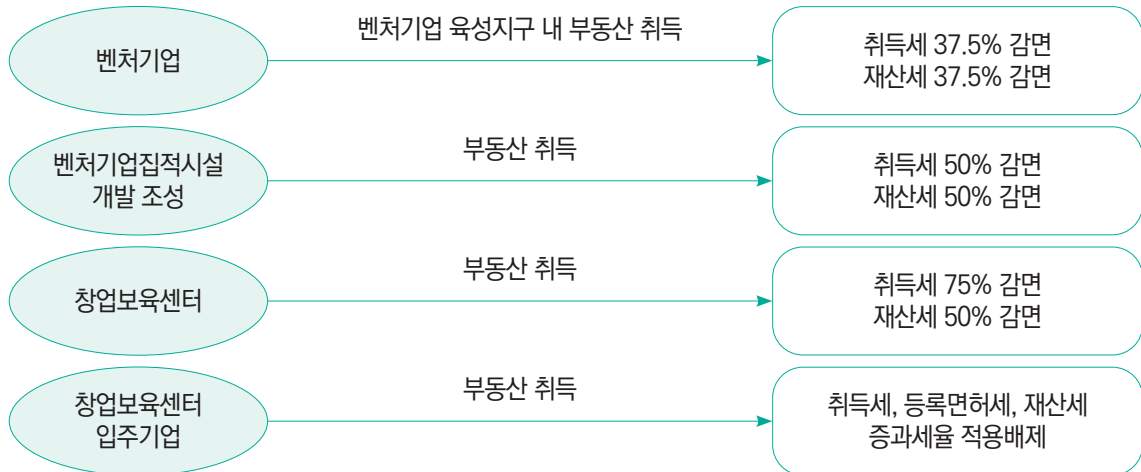
27) 서면-2017-상속증여-0204, 2017.02.14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종과세율 적용배제
-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종과세율 적용 배제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
 -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 적용배제
 -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경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를 적용.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180조,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지원대상	세부사항	지원내용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7.5%감면 재산세 37.5%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50%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벤처기업에 한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0%감면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100%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75%경감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취득세 2% 적용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지원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의 요건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 지원 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시행규칙 제19조의3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지원 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기업 매각의 요건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주주인 자
- (기업매각 요건) 본인 보유 주식의 30%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 지원 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시행규칙 제19조의4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지원 대상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 지원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재기중소기업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 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6조, 시행령 제99조의6,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
-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102
-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07
-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109
-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12
-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 114
-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116
-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18
-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20
- 4-10 대손금의 손금산입 • 122
- 4-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123
- 4-1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125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반 업 종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④임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⑤광업		광업	B	1,000	80				
	⑥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	120	-	20	15	3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전기장비 제조업	C28	1,000	120				
			가구 제조업	C32		120				
			식료품 제조업	C10		120				
			담배 제조업	C12		8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000	120	-	20	15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8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음료 제조업	C11	800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⑦하수·폐기물처리 (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E	800	30				
	⑧건설업		건설업	F	1,000	80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⑩출판업		정보통신업	J	800	5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⑪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정보통신업	J	800	50	-	20	15	30
	⑫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⑬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⑭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⑮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포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⑯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⑰직업기술학원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업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⑱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	30				
	⑲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른 수탁 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	80				
중 소 기업	⑳자동차정비 공장운영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㉑선박관리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㉔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	20	15	30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업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전문휴양업,종합 휴양업, 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관광유람선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㉔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㉔재가장기요양 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중 소 기 업	㉔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㉔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㉔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㉔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㉔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㉔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	20	15	30
	㉗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㉘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㉙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㉚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㉛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임대 한정	임대업	N76	400	30				
	㉜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㉝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㉞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㉟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㊱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L	400	30				
	㊲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1,000	120				
총	㊳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일반감면율의 50%를 감면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㊴자동차 임대업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	임대업	N76	400	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도 매 등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	50	-	10	5	10
	②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 차지하고,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지 식 기 반 산 업	①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10	20	15	30
	②전기통신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③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④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⑤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정보통신업	J	800	50				
	⑥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⑦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⑧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도안,설계등 작성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⑨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⑩방송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⑪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⑫서적,잡지,기타 인쇄물출판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⑬창작및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⑭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 기타 내용

① 요약표

구 분		감 면 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²⁸⁾	수도권 ²⁹⁾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³⁰⁾

③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text{억원} - (\text{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times 500\text{만원})\}$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³¹⁾. 다만,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없고, 최저한세 적용³²⁾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29)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함

30)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과 동일

31) “11-2 중복지원의 배제” 참조

32)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참조

▶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 질문과 답변



질문 1

저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 B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³³⁾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3) 조심2011서2672, 2011.09.21.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³⁴⁾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9월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 시 2021년 9월말까지 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21년 10~12월까지 법인의 매출액이 15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³⁵⁾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산매출액은 각각 60억원(45억원*12/9), 60억원(15*12/3)이므로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4

저희 법인은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당해 법인세 신고 시 도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³⁶⁾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4) 서면법규 -217, 2013.02.27.

35) 서면법규 -567, 2014.06.02. 서면법규 -568, 2014.06.02.

36) 재조에 -17, 2005.01.07.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인턴의 정직원 채용기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턴은 업무파악을 위해 2019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19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8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18년으로 완료되어 2019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었던 나인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알기쉬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식회사 절세는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현황(주식회사 절세 - 중기업, 제조업/임대업, 수도권 외 소재, 근로자변동없음)

- ① 2021년 과세표준 : 제조업 1,400,000,000, 부동산임대업 200,000,000
- ② 2021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1,400,000,000 \times 20\% = 300,000,000$

■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21년 산출세액 : 300,000,000
- ② 202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300,000,000 \times 87.5\% \times 15\% = 39,375,000$
- ③ 2021년 납부할 세액 : $300,000,000 - 39,375,000 = 260,625,000$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소득구분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과목	합계	감면분		기타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1,600,000,000	1,400,000,000	87.5%	200,000,000	12.5%
과세표준	1,600,000,000	1,400,000,000		200,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

①구 분	근거법 조 항	②계산명세	③감면대상 세 액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감면세액 (③-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제7조	$300,000,000 \times \frac{1,400,000,000}{1,600,000,000} \times 15\%$	39,375,000	-	39,375,000
합 계			39,375,000	-	39,3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⑫ 과세표준금액(⑪+⑪)	25	1,6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⑫ 세 율	19	20%	7%		20%
⑫ 산 출 세 액	20	300,000,000	112,000,000		300,000,000
⑫ 감 면 세 액	21	39,375,000			39,375,000
⑫ 세 액 공 제	22				
⑫ 차 감 세 액(⑫-⑫-⑫)	23	260,625,000			260,62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액 감면					
	소 계				
세액 공제					
	소 계				
합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39,375,000	39,375,000
	소 계			39,375,000	39,375,000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 공제						
	소 계		149			
합 계			150			39,375,000
공제감면세액 총계			151			39,375,00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000 000 000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2021년 01 월 01일부터	2021년 12 월 31 일까지
--------	------------------	-------------------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감면율	⑦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총족 감면세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15%	39,375,000	39,375,000	
기타						
세액감면 합계				39,375,000	39,375,000	

2022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101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³⁷⁾

▶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³⁸⁾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37)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38)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공제금액= 소득공제액*(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근로)소득금액)〉

▶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³⁹⁾
-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세무사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9)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1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 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가입제한 대상

-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입부금

- ①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공제금 지급

-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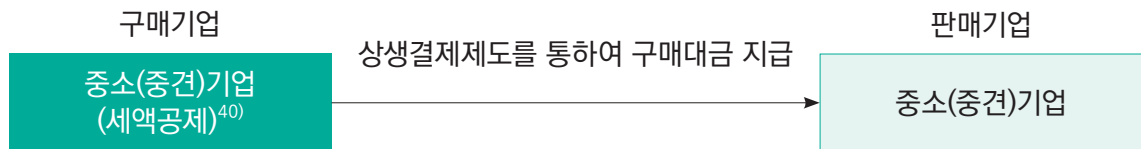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⁴¹⁾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⁴²⁾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40)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41)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2)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지원 내용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의 세액공제

- 16~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의 세액공제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지원 대상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⁴³⁾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⁴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⁴⁵⁾

업 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5억원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일부제외), 운수업및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그 외의 사업	15억원

▶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⁴⁶⁾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4)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46)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해당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용어 해설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인	“4-4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 ⁴⁷⁾ 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 ⁴⁸⁾ 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이내)

▶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도:개인120만원, 법인150만원)⁴⁹⁾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47)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대여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인 법인

48)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9)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포함)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추징
-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 배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시행령 제121조의 6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시행령 제133조
- 법인세법 제60조의 2, 시행령 제97조의4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자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①	3,600만원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 용 룰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초과)×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초과)×0.03%

▶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란 ?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문화접대비란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 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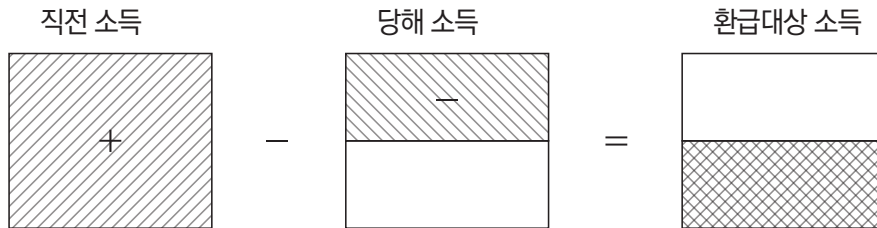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 용어 해설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3.1.1
 - ② 2021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 ③ 2020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 과세표준 : 120,000,000
 - Ⓑ 산출세액 : 12,000,000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0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begin{aligned} & 2020년 산출세액 - \{(2020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2020년 법인세율\} \\ &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times 10\% \} \\ & = 5,000,000 \end{aligned}$$
 - ② 2021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 ③ 2021년 환급신청액 : $\text{Min} [\text{①}, \text{②}] = 4,000,000$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⁵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5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사회적기업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⁵¹⁾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5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장애인⁵²⁾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4-10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자원 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⁵³⁾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 받음

▶ 유의사항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
(결산조정사항)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53) 2020년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2020년 이후 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4-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⁵⁴⁾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공제가능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 지원 내용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2.6%
- 그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54) 2021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모든 간이과세자가 업종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2021년 7월 1일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를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를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4-1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 공제금액

$$\text{의제매입세액} = \text{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times \text{공제율}$$

▷ 공제율

• 음식점업

구분	공제율
①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② 연매출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③ 법인사업자	6/106

• 제조업

구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4/104
③ 그외	2/102

• 기타업종

구분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2/102

▶ 공제한도

구분	연간 매출액	음식점업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65%	55%
	2~4억원	60%	
	4억원 초과	50%	45%
법인사업자		40%	

▶ 절차 및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제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1 통합투자세액공제 • 128

5-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132

5-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35

5-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39

5-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41

5-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43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45

5-8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148

5-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종전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 전면개정)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⁵⁵⁾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⁵⁶⁾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⁵⁷⁾

▶ 지원 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소기업	10%	12%
중견기업	3%	5%
일반기업	1%	3%

55)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는 제외

5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한 자산

5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한 자산

-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3%]

단,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추가공제액 - 기본공제액) > 0] 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 감면 세액 추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정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연 9.12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3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대표 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 고장이 잦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늘어나는 디지털 출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던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계구입 시 절세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세무사 답변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인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계장치 투자액(사업용 자산 해당) : 100,000,000원

디지털 신기계 구입비 : 80,000,000원

중고 인쇄기계 구입비 : 20,000,000원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50,000,000원

MAX (①, ②) = 8,9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함)⁵⁸⁾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10% + 추가공제 $[80,000,000원 \times 10\%] + [(80,000,000원 - 50,000,000) \times 3\%] = 8,900,000원$

(추가공제액 90만원이 기본공제액 8백만원보다 초과하지 않으므로 한도 계산없음)

-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액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3%
 $80,000,000원 \times 3\% = 2,400,000원$

※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단, 투자자산별로 현행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는 없음)

58)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7759호] 제36조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1.03.16 개정)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 대 표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 ***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2021 년 01월 01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			
❸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117)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2항	13W	10%	8,900,000	8,900,000
(152) 세액공제 합계		1A3		8,900,000	8,900,000

5-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⁵⁹⁾
 - ③ 정보시스템⁶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5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6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⁶¹⁾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⁶²⁾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⁶³⁾로서 규제자유특구⁶⁴⁾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 자원 내용

- 해당 기업⁶⁵⁾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 ⁶⁶⁾ 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공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중소기업	3%	3%
중견기업	1%	2%

61) 2021년 1월 20일 현재

6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제4항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5호

6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정

6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66) 여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 질문과 답변



질문 1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⁶⁷⁾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⁶⁸⁾

세무사 답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만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3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겸 동전교환기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⁶⁹⁾

세무사 답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7) 서면법령해석법인2014-21121(2015.04.22)

68) 서면법인2017-965(2017.05.23)

69)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53(2019.04.26)

5-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자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⁷⁰⁾(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⁷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⁷²⁾
 -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⁷³⁾
 -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⁷⁴⁾

7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7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73)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74)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⁷⁵⁾,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
-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지원 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시설	세액 공제 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⁷⁶⁾	10%	5%	1%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7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76)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 질문과 답변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떻게 있을까요? 2021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종전 3년간 시설 투자 이력은 없음)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신품로 구비하는 경우에 환경보전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 (①, ②) = 8,000,000원

-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2021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21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10% + 300,000,000×20% = 80,000,000

2021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10% = 8,000,000

- 통합투자 세액공제

8천만원×10% + (추가 공제 = 0) = 8,000,000원

2021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8,000,000 = 72,000,000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8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2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⁷⁷⁾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⁷⁸⁾

세무사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77) '축열식 히트펌프'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

78)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09 (2015.12.14)



질문 3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⁷⁹⁾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4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 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근, 형강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압연설비」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⁸⁰⁾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79) 서면법인2015-153(2015.05.29)

80) 서면법인2019-3059(2019.12.06)

5-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 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⁸¹⁾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8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5 별표7(신성장·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감면 세액 추정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시행령 제22조의9, 시행규칙 제13조의8

5-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⁸²⁾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투자금액 \times 2\%) + (투자금액 \times \frac{(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times \frac{1}{5})$$

8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5-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연속하여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것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지원 대상

-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⁸³⁾ 대한민국 국민⁸⁴⁾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⁸⁵⁾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증설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위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8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8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

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⁸⁶⁾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대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면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하는 경우

86)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 제118조의 2, 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15조의 2, 시행규칙 제47조의2

5-8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업 특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지원 대상

-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 ㄹ. 기계 및 장치

-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ㄷ.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ㄹ.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ㅁ.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ㅂ.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ㅅ.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ㅈ.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제6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52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61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65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68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71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74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177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179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연구·인력개발비란?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 기존의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 외 첨단소재·부품·장비분야,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 지출액만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최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 자원 내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당기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나. $\frac{\text{당기수입금액}}{\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일정비율*

-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 2) 중견기업의 경우 40%
-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당기일반연구·

인력개발비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frac{\text{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50\%$, 한도 2%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년	제외된 후 4~5년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2%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25%
신성장 연구·인력 개발비	가 항목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나 항목	$\frac{\text{당기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text{ 한도 } 10\%(\text{코스닥상장중견기업 } 15\%)$				

*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 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 용어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대표이사 나사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년째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장은 경쟁사의 제품 기술 향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예전같이 마진을 못 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금의 가격경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신제품 개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급격한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부서의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로 회사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6,000,000원 (2018년)17,000,000원 (2019년)25,000,000원 (2020년)30,000,000원
- (2021년)40,000,000원

이때 나사장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문제로 절세방안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

2021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text{Max}[\text{㉠}, \text{㉡}] = 10,000,000\text{원}$

㉠ 총액발생기준 : $40,000,000 \times 25\% = 10,000,000\text{원}$

㉡ 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times 50\% = 6,250,000\text{원}$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의 상무이사인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및 경쟁회사의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나상무는 세액공제를 부인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을 공제받는 규정이지만, 상무이사등이 접대업무를 겸하는 경우나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상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타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전담부서의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⁸⁷⁾

☞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⁸⁸⁾

☞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 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⁸⁹⁾

87) 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6.24. 선고2011두6844 판결

88) 조심2014중3244 (2014.08.11.)

89) 서면2팀-2279, 2006.11.09.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를 영위하는 나사장님은 절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인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비용에 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⁹⁰⁾

▷ R&D 사전심사 제도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R&D 사전심사 도입효과

☞ 납세자는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관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90) 대법원2014.3.13., 2013두22147

•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제출서류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Tel. 044 - 204 - 3333~9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 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frac{\text{당기수입금액}}{\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25%) 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frac{\text{당기수입금액}}{\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5%)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8%, 중소기업제외 1~3년 15%, 4~5년 10%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4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3.16개정〉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②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25%
10,000,000	10,000,00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0.3.13개정〉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②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발비		2	30,000,000	12	10,000,000		
합 계		2	⑥ 30,000,000	12	⑦ 10,000,000		⑧
						총 계	
						40,000,000	
						⑬ 40,000,000	
합 계		⑨		⑩	⑪	⑫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과세연 도 발생액	⑮ 직전4년 발생액계 (⑮+⑮+⑮+⑮)	'20.01.01~'20.12.31 ⑮(직전 1년)	'19.01.01~'19.12.31 ⑮(직전 2년)	'18.01.01~'18.12.31 ⑮(직전 3년)	'17.01.01~'17.12.31 ⑮(직전 4년)
40,000,000	78,000,000	30,000,000	25,000,000	17,000,000	6,000,000
⑳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⑮/4)	19,500,000	㉑ 직전 3년간 연평 균발생액 (⑮+⑮+⑮)/3	24,000,000	⑮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⑮+⑮)/2	27,500,000
㉒ 증가발생액				10,000,000	

④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④④ 대상금액(= ④③)	④⑤ 공 제 율	④⑥ 공제세액
		40,000,000	25 %	10,000,000
		: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⑮(㉑)경우 공 제 제외)	④④ 대상금액	④⑤ 공제율	④⑥ 공제세액	* 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40% - 그 외의 기업 : 25%
	10,000,000	50 %	5,000,000	

④③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㉒ 과 ㉒ 중 선택)	10,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㉑ 과 ㉒ 중 선택)	
	중견기업 (㉒ 와 ㉒ 중 선택)	
	일반기업 (㉒ 와 ㉒ 중 선택)	

(2쪽 중 제2쪽)

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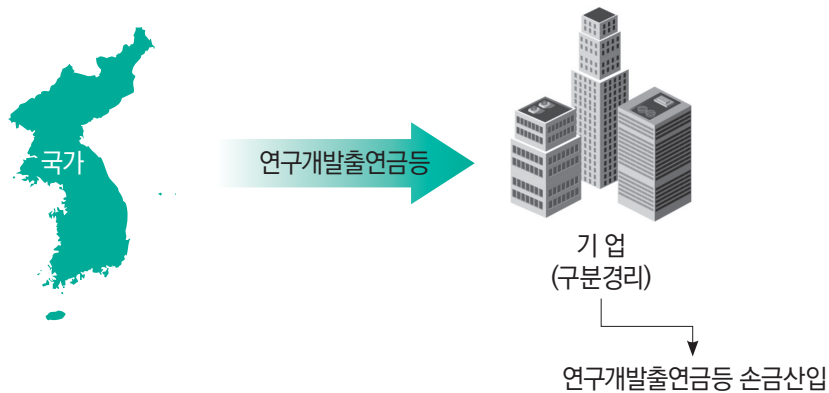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익금 산입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 사후 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3

▷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금년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던 나사장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를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나사장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미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나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합니다.⁹¹⁾

91) 대법원 2003두773, 2004.11.12.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사후 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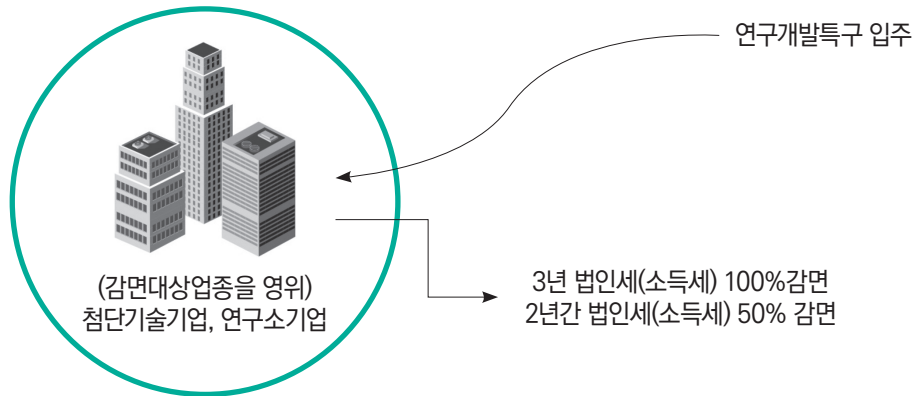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 대여 : 해당사항 없음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 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 + ②
 -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 50%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예규 및 판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⁹²⁾

92) 법규법인2011-13, 2011.01.14.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2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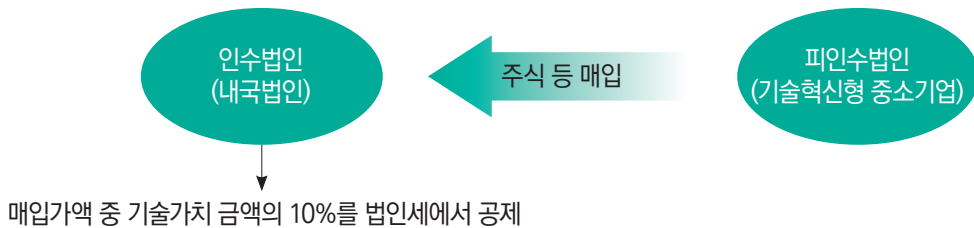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하 기준지분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text{매입가액} \geq (\text{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times 1.3) \times \text{당초지분비율}^*$$

- * 당초지분비율 :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 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조의 3 또는 「상법」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text{매입가액 중 기존가치금액} \times (\text{당초지분비율} - \text{현재지분비율}) / \text{당초지분비율} \times 1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국법인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디지털카메라 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 카메라 순간포착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A중소기업의 주식 중 60%를 취득하였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나사장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주식의 10%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나사장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생각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⁹³⁾

93) 「조세특례제한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허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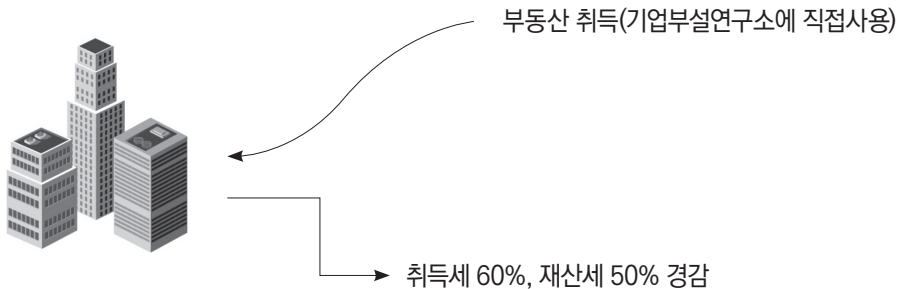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 1.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취득세	60%	70%	35%	45%
재산세	50%	60%	35%	45%

▶ 사후 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관련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⁹⁾

제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184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87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9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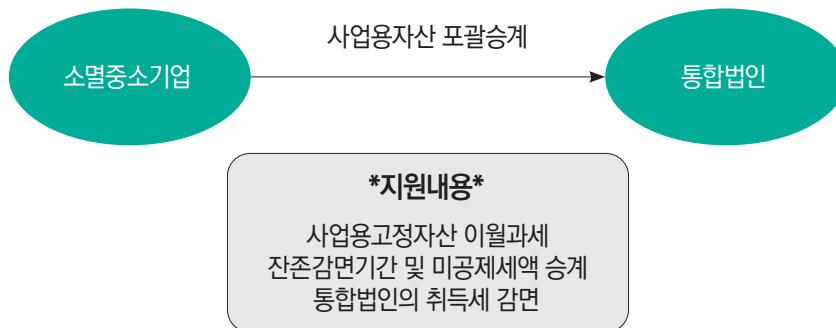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통합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⁹⁴⁾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정
 -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⁹⁵⁾
 -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⁹⁶⁾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9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5)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96)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기타 오락·유흥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질문과 답변



질문 1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건물 중 한 층은 분양하고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⁹⁷⁾

97) 대법2014두37931, (2014.10.1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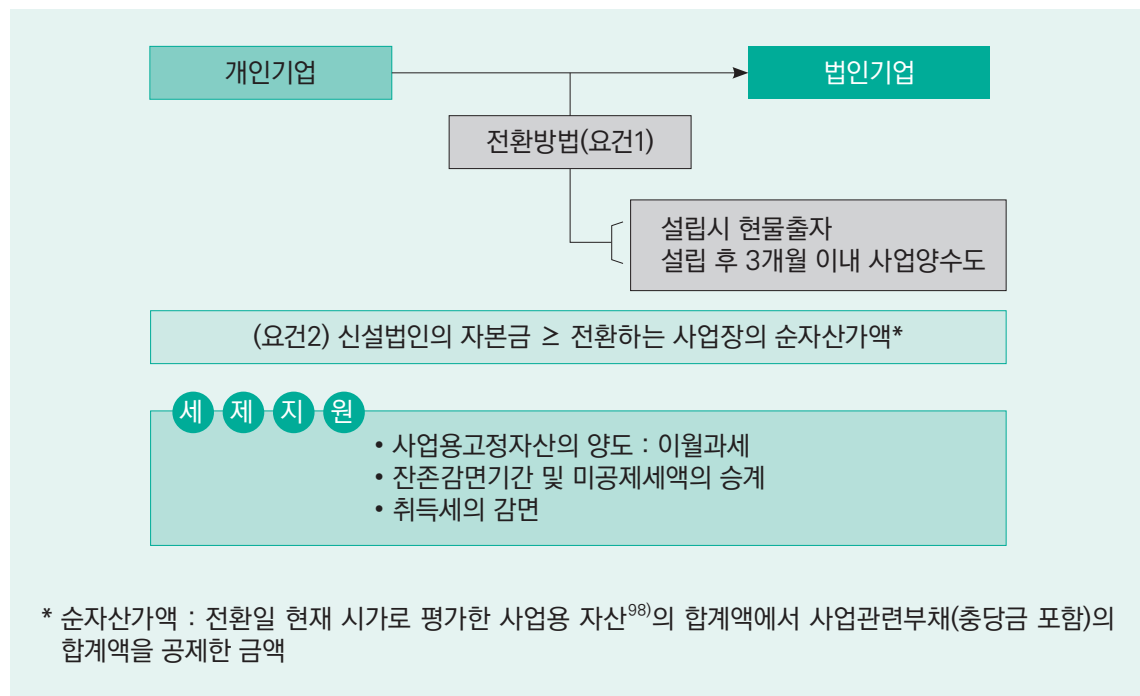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98)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기준법령해석재산2016-15(2016.05.04.)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같은 조제2항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⁹⁹⁾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유의 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¹⁰⁰⁾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¹⁰¹⁾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¹⁰²⁾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9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임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101)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102)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나사장은 매출 및 이익의 상승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던 차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 할 때가 아닌 법인에서 양도할 때 납부할 수가 있고, 법인 명의로 등기 시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공장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다급한 마음에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춰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며, 취득가액을 잘 못 산정한 부분은 나사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재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¹⁰³⁾

나사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되어 고민이 깊었으나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세무사의 답변을 듣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3) 조심2015서4134(2015.12.04.)

▶ 질문과 답변



질문 1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¹⁰⁴⁾



질문 2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세무사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¹⁰⁵⁾

104) 조심2015지536 (2015.05.27)

105) 광주지법2015구합12052(2015.11.26.)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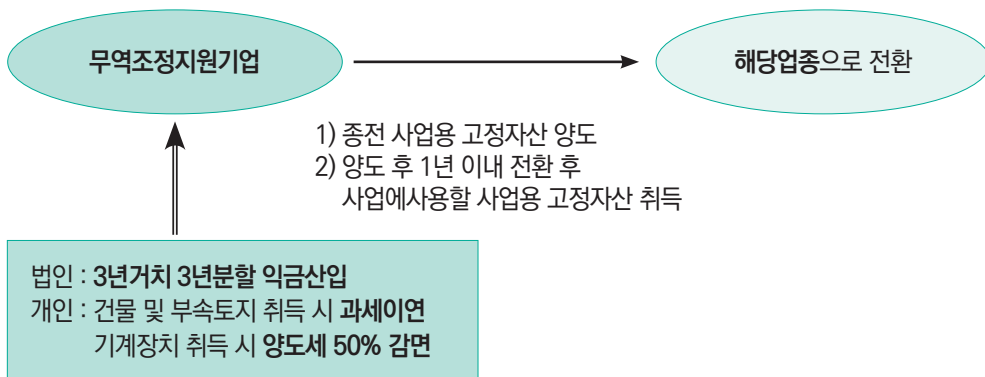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해당 업종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참조

▶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text{과세이연금액} = (\text{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 \text{이월결손금}) \\ \times (\text{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 / \text{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text{세액감면액} = (\text{전환 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 \times (\text{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 \text{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times 50\%$$

-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text{과세이연금액} = \text{양도차익} \times (\text{전환 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 / \text{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 유의 사항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

- 법인 : 해당사유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 개인 : 해당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 용어 해설

- 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제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196
-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202
-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05
-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07
-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10
-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12
-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214
-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7
-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9
-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21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¹⁰⁶⁾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자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106) 공장 신축 :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 자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⁰⁷⁾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후 관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¹⁰⁸⁾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 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③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④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 ⑤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¹⁰⁹⁾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107) 이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108)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 제2항 각호의 사유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전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현재 주식회사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 : 2005.1.1
- ② 서울 공장 양도일 : 2020.12.31
- ③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21.1.1
- ④ 2021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⑤ 2021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2021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21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 $180,000,000 \times 100\% = 180,000,000$
- ③ 2021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80,000,000 = 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은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답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1천820만원과 가산세까지 2천300만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4호(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¹¹⁰⁾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¹¹¹⁾

세무사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10)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

111) 법인-89, 2014.03.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21.03.16 개정)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액 감면세액
...						
(1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100%	32,000,000	13,800,000	13,800,0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2015.03.13 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⑥ 업태 · 종목 제조업/금속제련		
구공장	⑦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⑩ 생년월일 ****. **. **	⑪ 업태 · 종목 제조업/금속제련	⑫ 조업개시일 2005년 1월 1일

공장이전	⑬ 구공장 이전일 2020년 12월 31일	⑭ 구공장 폐쇄(양도)일 2020년 12월 31일
	⑮ 신공장 착공일	⑯ 신공장 사업개시일 2021년 1월 1일

감면세액계산내용

⑰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계산내용	⑱ 감면대상소득금액	260,000,000
	⑲ 감면비율	100%
	⑳ 감면대상세액	32,000,000원
	㉑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18,200,000원
	㉒ 감면세액	13,800,000원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¹¹²⁾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 지원 내용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⁰⁶⁾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112)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113)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대상 소득 : [① × ② × ③]

①	과세연도 과세표준	-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	--------------	---	--------------------------------------	---	--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후 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 본사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본사업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중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 사업무에 종사하는 연 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60조의 2

▶ 질문과 답변



질문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¹¹⁴⁾

세무사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¹¹⁵⁾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14) 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115)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192, 2011.12.26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text{양도가액} - \text{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text{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사후 관리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또는 이전 후 사업개시일까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이 확정된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③ 의정부시
- ④ 구리시
-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⑥ 하남시
- ⑦ 고양시
- ⑧ 수원시
- ⑨ 성남시
- ⑩ 안양시
- ⑪ 부천시
- ⑫ 광명시
- ⑬ 과천시
- ⑭ 의왕시
- ⑮ 군포시
-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text{양도가액} - \text{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text{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사후 관리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지원 대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 사후 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사업용자산¹¹⁶⁾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¹¹⁷⁾

116)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117) 청년 상시근로자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

▶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자원 내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¹¹⁸⁾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¹¹⁹⁾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¹²⁰⁾)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118)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19)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소득은 제외

120) 양도소득금액 × ($\frac{\text{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사후 관리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¹²¹⁾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12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¹²²⁾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¹²³⁾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23)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¹²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 사용 부분 제외)을 포함

▶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24)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¹²⁵⁾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¹²⁶⁾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26)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지원 대상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¹²⁷⁾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¹²⁸⁾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127)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12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새로운 업종 시작후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3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시행령 제35조의3

제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24
-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28
-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34
-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38
-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40
- 9-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42
-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44
-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47
- 9-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51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 감면

▶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2제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업 종	비 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3, 시행령 제27조 제26조의3④,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나직원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호심이 깊은 나직원은 환급액을 어머니의 월체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 어머니에게 월체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나직원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김직원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지 못하여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이직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틈틈이 세법공부를 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무사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 A 중소기업체 2019.3.1.(취업) ~ 2020.7.10(퇴사), 소득세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2020.8.5(취업)하여 계속 근무, 소득세 감면 신청

위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2020.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23.8월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위기 지역(기간 2021.1.1.~2021.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20년	2021년
매출액	1,000,000,000	850,000,000
상시근로자수	5	5
1인당 임금총액	24,200,000	21,600,000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11,000	9,000
소득금액	100,000,000	85,000,000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11,000	12,000

세무사 답변

☞ “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로 절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 1,907,500

① : $(24,200,000 - 21,600,000) \times 5 \times 10\% = 1,300,000$

② : $(12,000 - 11,000 \times 105\%) \times 9,000 \times 15\% = 607,5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21년 1 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 일까지
③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⑨-⑫)×⑪×10% + (⑮-⑱×105%)×⑭×15%]		1,907,50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121,000,000	5	24,200,00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108,000,000	5	21,600,000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 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 당 시간당 임금(⑬÷⑭)
108,000,000	9,000	12,000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 전 과 세 연 도 상 시 근 로 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 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 당 시간당 임금(⑯÷⑰)
121,000,000	11,000	11,000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중소벤처기업부 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3. 16.>

(앞쪽)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 3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기업(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13,000,000×10/100+ 4,050,000×15/1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원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원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제3항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 50%	18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 내용

구분	근거법령	코드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⑭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⑮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⑯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1,907,500	1,907,500
⑰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⑱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⑲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⑳ 세액공제 합계		1A3		1,907,500	1,907,500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¹²⁹⁾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¹³⁰⁾

129) 원천세과-71 2010.1.22.

130) 원천-250, 2009.03.27, 원천세과-71 2010.1.22.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사회보험료의 100%
이 외 : 사회보험료의 50%(75%)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 + 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제1항)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신성장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2.① 외의 경우 : 1.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개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신고**하려고 하며,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 “세액공제의 적정성등을 검토를 해보니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 나사장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사장은 이월공제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지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나사장은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된 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야 합니다.

☞ 최저한세에 의한 이월공제액 확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인건비 × 30%(15%) 법인세(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②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③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법인세(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1,000만원 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700만원 공제

9-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소득세의 30% 세액감면

9-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복귀자

▶ 지원 대상

1.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2.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 법령 비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을 고용(복귀)한 날부터 2년(1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 (15%)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명단을 신청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1)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지원 내용

-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특례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text{임금증가분}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times [1 + 0.038(\text{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박사장님은 최근들어 절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조문을 보고 이를 회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 수에 연말에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에게 관련 법조항에 대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세무사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등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 400만원 등 법인세(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지원 내용

-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2.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① 외의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사후 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②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고용인원의 변화가 있어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CASE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2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3	8	11

세무사 답변

☞ “CASE 1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2 - 3 = \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4명이 아님에 주의)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공한 금액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5=4$ (명) 증가

청년외: $2-3=\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9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0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3.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5=4$ (명) 증가

청년외: $2-3=\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1. 3. 16.)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②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1		8		3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9		5		4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2		3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3	1천1백만원	3,300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3		3,300만원
중견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⑮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⑮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⑮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⑮-⑰)
11	8	3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⑮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㉔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㉑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㉓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㉑-㉓)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㉕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㉗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㉘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㉗	8,0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이 감소된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도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CASE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3	8	6

세무사 답변

☞ “CASE 2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2=3$ (명) 증가

청년외: $3-1=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5=\triangle 4$ (명) 감소

청년외: $5-3=2$ (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5=△4(명) 감소

청년외: 5-3=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9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3.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5 = △4(명) 감소

청년외 : 5-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 $\{[(13(명)-2(명)) \times (31,100(만원)-4700(만원))] + (2(명) \times 61,100(만원))\} = 2,600(만원)$

청년외 :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3. 13.>

(앞쪽)

사업연도	2021. 1. 1. ~ 2021.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조정액	⑪ 익금산입	02			
		⑫ 손금산입	03			
	⑭ 차가감소득금액 (⑩+⑪-⑫)	04				
	⑮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⑯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⑭+⑮-⑯)	06				

② 과세표준계산	⑱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⑰-⑰)					
	⑲ 이월결손금	07				
	⑳ 비과세소득	08				
	㉑ 소득공제	09				
	㉒ 과세표준 (⑱-⑲-⑳-㉑)	10				
	㉓ 선택표준이익	55				

	㉔ 과세표준(㉒+㉓)	56				
	㉕ 세율	11				
	㉖ 산출세액	12				
	㉗ 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㉘ 세율	14				

㉙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26	000	000
㉚ 차감납부할세액 (㉙ - ㉚ + ㉛)	30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양도차익	㉛ 등기자산	31			
		㉜ 미등기자산	32			
	㉝ 비과세소득		33			
	㉞ 과세표준 (㉛ + ㉜ - ㉝)		34			
	㉟ 세율		35			
	㊱ 산출세액		36			
	㊲ 감면세액		37			
	㊳ 차감세액(㊲-㊳)		38			
	㊴ 공제세액		39			
	㊵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제외)		58			
	㊶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㊷ 가감계(㊳-㊴+㊵+㊶)		41			
	기납부세액	㊸ 수시부과세액	42			
		㊹ ()세액	43			
		㊺ 계(㊸+㊹)	44			
	㊻ 차감납부할세액(㊺-㊻)		45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2021.1.1. ~ 2021.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⑮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⑮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⑮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 · 제11조 ·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 · 제94조 · 제96조		773		
	⑮4 기 타		775	26,000,000	26,000,000
	⑮5 소 계		780	26,000,000	26,000,000
법 인 세 법 등	⑮6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⑮7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⑮8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⑮9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⑮10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⑮11 기 타		785		
	⑮12 소 계		784		
⑮5 추가납부세액 합계(⑮5 + ⑮12)			790	26,000,000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업 연도	2021.1.1. ~ 2021.12.31.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⑲ 구분	⑳ 공제감면받 은연도	㉑ 추가납부 사유	㉒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㉔법 인 세 추가납부액 (㉒+㉓)
				㉓이율 (일변)	㉔기간	㉓금액 (㉒×㉓×㉔)	
1	2019	청년근로자 감소	26,000,000	-	-	-	26,000,000
계			26,000,000				26,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㉔(㉑+㉒+㉓)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1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 과 세 표 준	0
⑧ 산 출 세 액	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⑨ 가 산 세 액	(, , 2.5/10,000)
⑩ 총 부 담 세 액	0
⑪ 기 납 부 세 액	5,200,000
⑫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5,200,000
⑬ 분 납 할 세 액	0
⑭ 차 감 납 부 세 액	△ 5,200,000
⑮ 총 당 후 납 부 세 액	△ 5,200,000
⑯ 국 세 환 급 금 청 총 당 신	환 급 법 인 세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3 월 31 일

신고인(대표자)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 10 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 266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 288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9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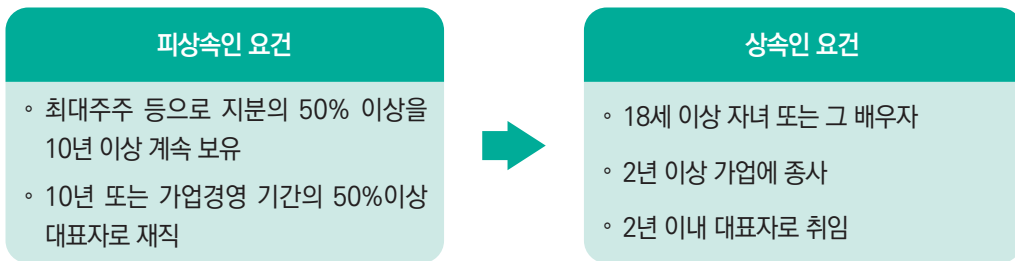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 지원 요건

- 상속가업 요건¹³¹⁾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 요건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131) 피상속인이 20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 ②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¹³²⁾

-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¹³³⁾
-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해당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전체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32)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133)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해당업종
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해당업종	관련법령	세 부 사 항
가.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1호거목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나. 엔지니어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9항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 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다.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바. 선박관리업	해운법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사. 의료기관운영업	의료법	㉠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
아.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 장업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게도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기업해당업종	관련법령	세 부 사 항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함.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카.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타.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운영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㉔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㉕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㉖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㉗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파.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㉙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㉚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거.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나목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을 말함.
너.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㉛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㉜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함.
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함.

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¹³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B	광업(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	석탄 광업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 광업	061	철 광업
				062	비철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	토사석 광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10~33)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원단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4) 본 표는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10~33)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10~33)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E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7~39)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재활용포함)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포함) 및 원료 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1	건물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12	토목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26	건설장비 운영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61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4	생활용품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6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68	상품 종합 도매업
				471	종합 소매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7	연료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9	무점포 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H	운수업(49~5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491	철도 운송업
				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1	항공 여객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	숙박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59142)제외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중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753	경비,경호및탐정업 중 경비및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서비스업(753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4	무형재산권임대업 중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856	기타교육기관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업훈련기관(8565), 기타기술및직업훈련 학원(85669)
O	사회복지 서비스업(8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업(90212) 제외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2	노동조합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그 외기타개인서비스업 중 개인간병인 및유사서비스업(96993)

▶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¹³⁴⁾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¹³⁵⁾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¹³⁷⁾ 및 이자상당액¹³⁸⁾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135)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13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규정된 사유

137) 5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 80% 추징률 적용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138) 추징될 상속세상당액 × (당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 사유발생일) × 1.8% / 365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외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면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판단)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일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면서 7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¹³⁹⁾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139) 조세포탈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의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총급여액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약

구 분	요 건 내 용
사후관리기간	7년 (2020년 이전 분은 10년 적용)
고용유지의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②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 이상 (중견기업도 동일) ② 7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
업종유지의무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20년 개정이전 공제분도 적용 가능 · 추가된 총급여액 기준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부분은 2020년 개정이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가능 · 개정된 규정 적용 선택 시 전체 과세기간 또는 해당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함
자산유지의무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승인 받는 경우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주된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처분 후 대체 취득한 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 허용 사유로 추가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 질문과 답변



질문 1

저는 2015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족가방제조업으로 기업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새로이 가족신발 판로를 개척하게 되어 신발제조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제받았던 상속세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 답변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을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업종을 변경하셨다면 소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줄었고 (2020년 개정 이전 기업상속공제 분은 10년) 업종변경도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으로 개정되어 가족가방제조업에서 가족신발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더라도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가족가방제조업과 가족신발제조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족가방제조업 : C제조업 (10~34)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제조업 →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② 가족신발제조업 : C제조업 (10~34)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1521 신발제조업 →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따라서 가족가방제조업에서 가족신발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중분류내의 변경이므로 기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계속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기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세무사 답변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기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¹⁴⁰⁾

140) 조심2013부1082(2013.06.28.)



질문 3

2017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전략 상 향후 제조라인의 일부를 자동화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용인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줄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맞습니까?

세무사 답변

2020년부터는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자산으로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제조시설의 자동화로 기존 정규직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두 사항 모두 20% 이상 감소한다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으므로 사후관리기간은 7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며, 추징률 또한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고용인원은 감소하나 총급여액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기준총급여액의 80%이상) 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상속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된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대한 판단도 동일하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질문 4

저는 아버님과 함께 개인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업상속 가능한 자산에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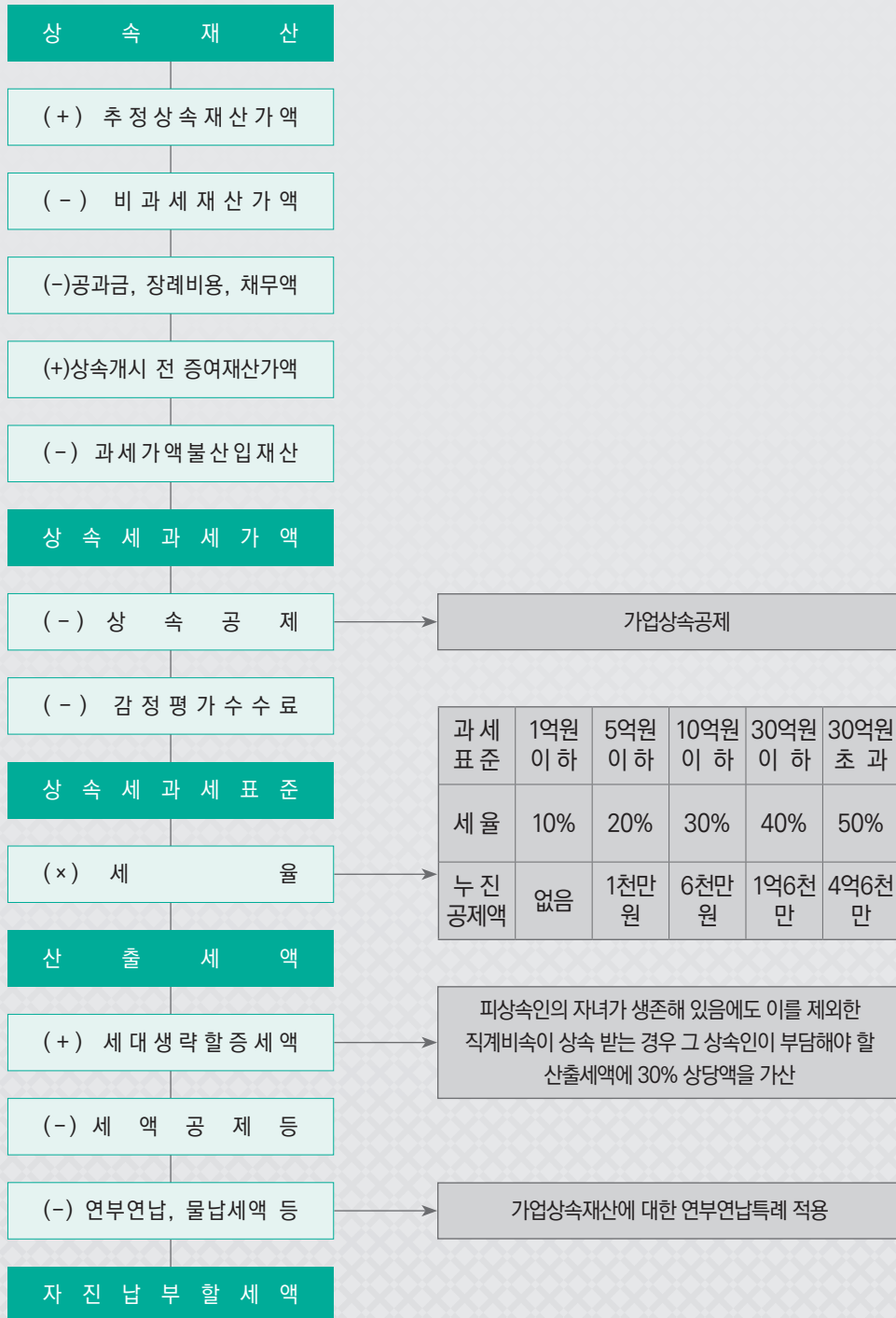
또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는 가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언 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처분된 가액이 사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20% 또는 10%를 넘게 되어 사후적인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큼니다. 이는 오히려 가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법인 가업의 경우에는 처분제한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¹⁴¹⁾

141) 조심2019중2136(2019.09.09.)

〈상속세 계산 흐름도 및 기업상속 지원 내용〉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던 나 사장은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나 사장은 이대로 있다가 불시에 사망할 경우 30년 동안 어렵게 이룬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문득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만난 나 사장은 세무사의 질문에 따라 30년을 운영한 A회사와 27년을 운영한 B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평가액이 90억원 정도로 나 사장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액 60억원 정도의 B회사는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양 법인 모두 운영기간 내내 대표로 있었고, A회사는 큰아들에게 B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므로 5년 전부터 아들들은 각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공동상속 및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 주식가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사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회사와 가족들 걱정은 접고 남은 생애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기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편의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57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기업상속공제와 기타공제 10억원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1988. 4. 2)
- 상속인 : 자녀 나 임원 (A법인 임원, 재직기간 3년)
- 상속개시일 : 2021. 1. 5.

◆ (주)철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주식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150,000주, @350,000

◆ (주)철세의 자산 현황

- 총자산가액 : 500억원
- 임대부동산 : 70억원
- 업무무관자산(토지) : 70억원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60억원

◆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기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 기업상속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 기업영위기간 : 30년 이상
2. 기업상속재산가액 :
 - 주식의 가액 : $150,000\text{주} \times @350,000 = 525\text{억원}$
 - 사업무관자산비율 : 40% (200억원 / 500억원)
 - 기업상속공제액 :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315억원
 - ① 기업상속재산가액 : $525\text{억원} \times (1-40\%) = 315\text{억원}$
 - ② 한 도 액 : 500억원 (30년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0.03.13개정)

관리번호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나 임원	② 주민등록번호	841005-*****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 소	서울 양천구 **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녀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 상 속 인	⑦ 성 명	나 사장	⑧ 주민등록번호	551021-*****	⑨ 거 주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⑩ 주 소	서울 양천구 **로 ****				
	⑪ 상속원인	[√] 사망 [] 실종 [] 인정사망 [] 기타			⑫ 상 속 개 시 일	2021.01.05
세 무 대 리 인	⑬ 성 명	나 세무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관 리 번 호	
	⑯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⑰ 상속세과세가액		57,000,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 증 등 재 산 가 액	
⑱ 상속공제액		32,500,000,000		면 제 세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⑲ 감정평가수수료				⑳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㉑ 과 세 표 준 (⑰ - ⑱ - ⑲)		24,500,000,000	㉒ 신고 불 성 실 가 산 세		
㉓ 세율		50%	㉔ 납 부 지 연 가 산 세		
㉕ 산출세액		11,790,000,000	㉖ 납 부 할 세 액 (합계액) (㉒ + ㉓ - ㉔ - ㉕ + ㉖ + ㉗ + 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2019.03.20. 개정)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	⋮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52,5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50,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㉑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20,000,000,000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30,000,000,000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60%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31,500,000,000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31,500,000,000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0.03. 13 개정)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 가업현황			
상 호 (법 인 명)	(주) 절 세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대 표 자)	나 임원	주 민 등 록 번 호	841005-*****
개 업 연 월 일	1988.04.02	업 종	제 조 업
기 준 총 급 여 액	4,680,000,000원	기 준 고 용 인 원	88명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 표 기재)			
중 소 기 업 여 부	☒ 해당 ☐ 해당안됨	상 장 여 부 (상 장 일)	☐ 상장(. .) ☒ 비상장
중 견 기 업 여 부	☐ 해당 ☒ 해당안됨	직 전 3 개 사 업 연 도 평 균 매 출 액	98,500,000,000
다. 피상속인			
성 명	나 사장	주 민 등 록 번 호	551021-*****
가 업 영 위 기 간	1988.04.02.~ 2021.01.05	대 표 이 사 (대 표 자) 재 직 기 간	1988.04.02. ~2021.01.05
최 대 주 주 등 여 부	여	특 수 관 계 인 포 함 보 유 주식 등 지분율	100%
라. 가업상속인			
성 명	나 임원	주 민 등 록 번 호	841005-*****
가 업 종 사 기 간	2018.01.02~현재	임 원 / 대 표 이 사 취 임 일	2018.01.02
주 소	서울 양천구 **로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 (면 적)	단 가	가 액 비 고
비상장주식	150,000주	350,000원	52,500,000,000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31,500,000,000원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지원 대상

- 가업상속재산¹⁴²⁾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text{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지원 요건

- 상속가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중견기업은 매출액 요건 없음)

-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요건

5년이상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계속 보유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② 대표자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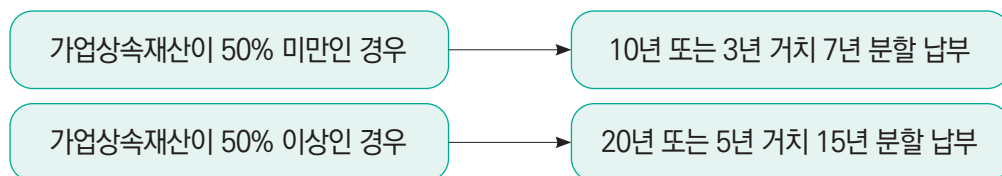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¹⁴³⁾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¹⁴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지원 내용



▶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 사후관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144)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1항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9조

▶ 용어 해설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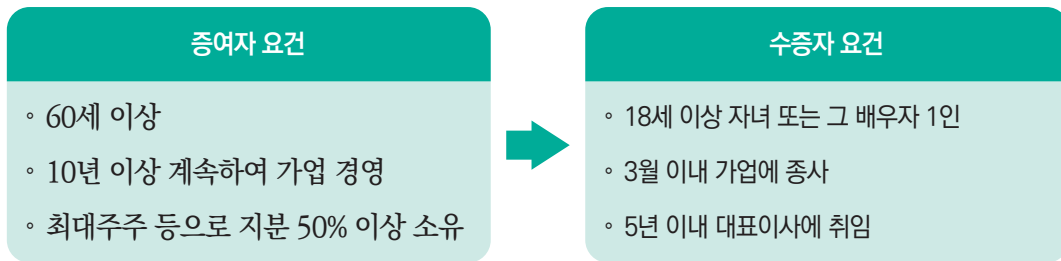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¹⁴⁵⁾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포함)
 - ② 경영 요건 : 중소기업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③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145) 10-1장 기업상속공제 용어해설 참조

▶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한도)¹⁴⁶⁾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 3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¹⁴⁷⁾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146)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함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14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시행령 제27조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질문과 답변



질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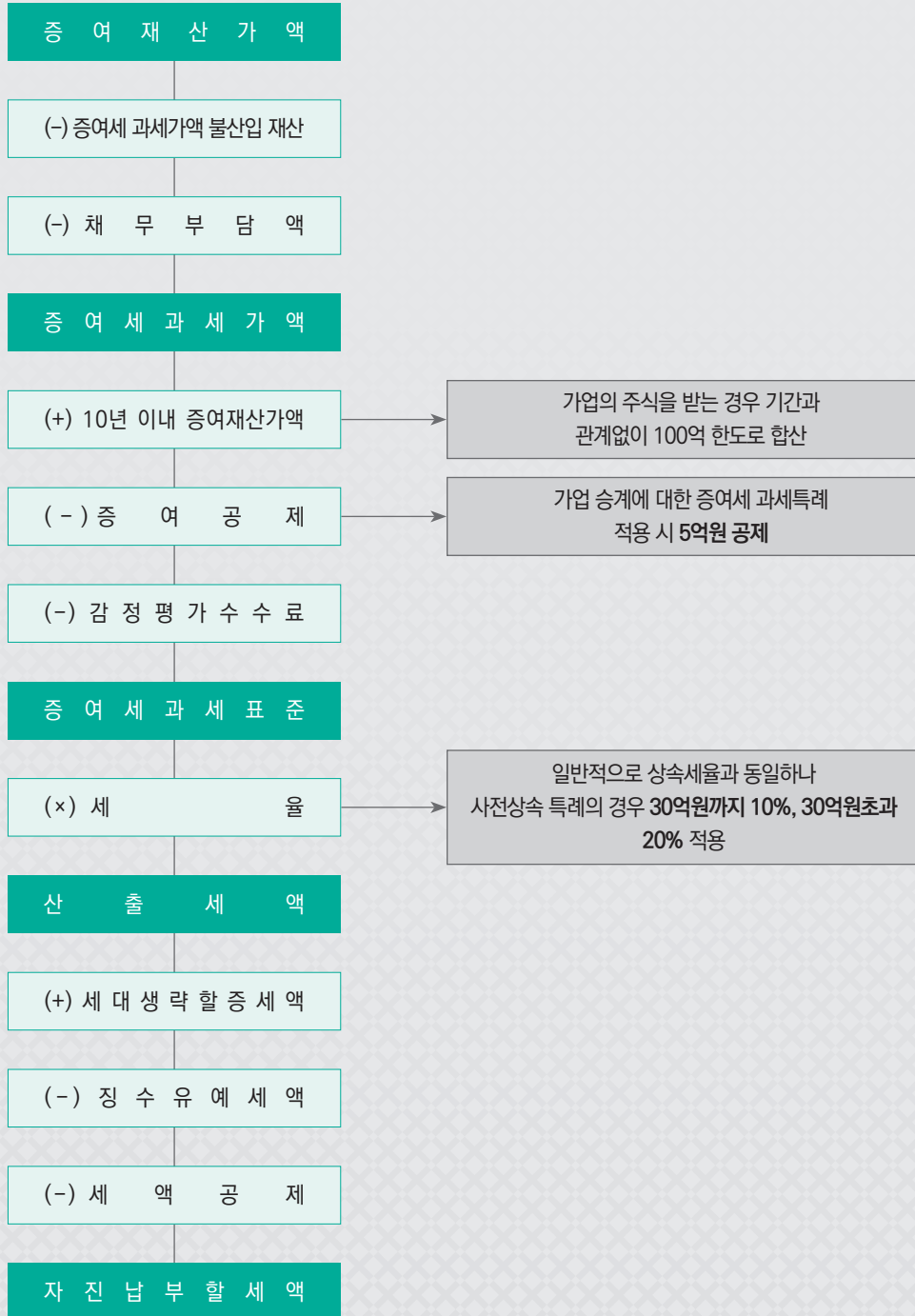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개인과 같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 제조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된 경우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 요건을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 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¹⁴⁸⁾

148)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증여세 계산 흐름도 및 가업상속 지원 내용〉



제 11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296

11-2 중복지원의 배제 • 304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307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 주요 적용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6	제14조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8	제28조의 3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8-3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1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8-2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3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1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6-3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5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6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3-4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7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9-8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5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2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1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3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4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00% 감면 제외)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중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품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21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1년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접대비부인액)	: 24,3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대손 부인액 손금추인)	: 12,000,000원
○ 과세표준	: 432,500,000원
○ 산출세액	: 66,500,000원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백만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6,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 \times 7\%$)
- 공제 가능 세액 : 36,225,000원($66,500,000\text{원} - 30,275,000\text{원}$)
 -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 - 36,225,000 = 20,775,000\text{원}$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6,500,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6,225,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 이월 세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20,775,000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2021.01.01. ~ 2021.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420,200,000			
소 득 조 정 금 액	⑩② 익금산입	02	24,300,000			
	⑩③ 손금산입	03	12,000,000			
⑩④ 조정 후 소득금액(⑩①+⑩②-⑩③)		04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⑩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⑩⑦ + ⑩⑧ - ⑩⑨)		10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⑩⑮ 차가감 소득금액 (⑩⑩ - ⑩⑪ - ⑩⑫ + ⑩⑬ + ⑩⑭)		1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⑩⑯ 소 득 공 제		16				
⑩⑰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⑩⑱ 과 세 표 준 금 액 (⑩⑮ - ⑩⑯ + ⑩⑰)		18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⑩⑲ 선 박 표 준 이 익		24				
⑩⑳ 과세표준금액(⑩⑱ + ⑩⑲)		2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㉑ 세 율		19	20%			
㉒ 산 출 세 액		20	66,500,000	30,275,000		66,500,000
㉓ 감 면 세 액		21				
㉔ 세 액 공 제		22	57,000,000		20,775,000	36,225,000
㉕ 차 감 세 액(㉒-㉓-㉔)		23				30,2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쪽)

사 업 연 도	2021.01.01. ~ 2021.12.3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 산 기 준	코드	③ 계산 명세	④ 공제대상 세 액
조세 특 례 제 한 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발생액 × 25/100	16B		16,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	13W		45,000,0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 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등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 험료(증가분의 50%,75%)	14Q		12,000,000
합 계				1A1		73,000,00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⑤ 구분	⑥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⑪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⑫ 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⑬ 공제세액 (⑩ - ⑪ - ⑫)	⑭ 소멸	⑯ 이월액 (⑩ + ⑪ - ⑬ - ⑭)
		⑦ 당기분	⑧ 이월분	⑨ 당기분	⑩ 1차 연도	⑩ 2차 연도	⑩ 3차 연도	⑩ 4차 연도	⑩ 5차 연도	⑩ 계					
16B	2021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0	16,000,000		0
	소계														
13W	2021	45,000,000		45,000,000						45,000,000	20,775,000		24,225,000		20,775,000
	소계														
14Q	2021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2,000,000		0
	소계														
합 계		73,000,000		73,000,000						73,000,000	20,775,000※		52,225,000		20,7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01.01. ~ 2021.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 액 가 면	:				
	⑬ 소 계		170		
세 액 공 제	⑬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⑬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B	16,000,000	16,000,000
	:				
	⑭ 소 계		180	16,000,000	16,000,000
⑮ 합 계(⑬ + ⑭)			110	16,000,000	16,000,00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 액 감 면	:				
	①⑦ 소 계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 액 공 제	①⑦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M			
	:					
	①⑧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45,000,000	24,225,000
	:					
	①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12,000,000	12,000,000
	:					
②⑦ 소 계			149		57,000,000	36,225,000
②⑧ 합 계(①⑦ + ②⑦)			150			
②⑨ 공제감면세액 총계(⑤ + ②⑧)			151			36,225,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000(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B	25%	16,000,000	16,000,000
:					
⑩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2항	13W	10%	45,000,000	24,225,000
:					
⑫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100%	12,000,000	12,000,000
:					
⑬ 세액공제 합계		1A3		73,000,000	52,225,000

11-2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세액감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8-1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4-8 4-9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7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8-1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8 4-9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7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 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5-1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5-2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제1항 제1,2호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5-3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 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5-4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5-1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5-3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 바목, 아목 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5-4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X	O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O
중소기업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O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행월 2021년 5월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042) 481-4548

한국세무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달로 105
TEL. 02) 587-3572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go.kr>

집필진

장기락 세무사
여지윤 세무사
최대영 세무사
권오정 세무사
임금숙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황용훈 세무사
장용희 사무관

